

## 의령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

2024년도 제3회 의령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2일

의령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근무 부서	주요 업무
정책 지원관	지방 행정 8급	2	2년	주40시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조사·수집·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 관련 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 등

###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3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지역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
  - 8급이하: 18세 이상(2006.12.31.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이하 생략)

## 나. 직무분야 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 책 지 원 관	지 방 행 정 서 기 (일반임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b>【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연구소(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포함), 대학교, 기업(사업체)에서 <u>공공행정, 예산, 결산, 감사·조사, 정책개발·연구 등 실무경력</u></li> </ul> <p>* 공공기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p> <p>** 출자·출연기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p> <p>※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p>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
- ※ 전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 40시간 기준)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2년으로 인정(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4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연봉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별표13 제5호 가목)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8,248	<b>41,551</b>	주40시간(9:00~18: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상기 연봉은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하한액 반영
-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 나. 복 무

- 근무기간: 2년(업무능력 및 실적이 탁월한 경우, 횡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 성과평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정기·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 성과연봉 계약 등 반영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5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 합격자 결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2024. 9. 11.(수) 예정
- 면접시험: 2024. 9. 20.(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9. 23.(월) 예정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일시	장소	
9. 2.(월) ~ 9. 6.(금)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9. 11.(수)	9. 20.(금)	의회 3층 제1회의실	9. 23.(월)

- ※ 시험일자, 면접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 서류전형합격자, 면접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 의령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uiryeong.go.kr/council/index.uiryeong>) 의회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활용
- 접수기간: 2024. 9. 2.(월) ~ 2024. 9. 6.(금) 5일간
- 접수처: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1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증지 첨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주소 : (우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 의회사무과 의정팀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055-570-2073)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서류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서 재공고
  - 재공고 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추가 제출할 필요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공고일 기준)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서식 2)

- 응시수수료 : (8급) 의령군 수입증지 5,000원

※ 구입처: 의령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해당금액 상당)로 교환하여 동봉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지원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③ 이력서 1부(서식 3)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서식 4) - A4용지 2매 이내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 5) - A4용지 3매 이내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6)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7)

⑧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⑩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서식 8)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⑪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⑫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 10 응시자 유의사항

- ①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서류 기재사항,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④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예정이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⑥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⑦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⑧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의령군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055-570-2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의령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공지사항)’란에 게재함.

# 직 무 기 술 서

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2명

근무예정부서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li> <li>○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li> <li>○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li> <li>○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li> <li>○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회의규칙) 관련 업무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 등</li> </ul>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li> <li>○ 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에 대한 이해력</li> <li>○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분석·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제시 능력</li> <li>○ 회기운영, 의사진행,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력</li> </ul>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기능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지식</li> <li>○ 자치법규 제·개정절차 등 법제 업무에 대한 지식</li> <li>○ 정책발굴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li> </ul>
-------	--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2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b>【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b>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연구소(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포함), 대학교, 기업(사업체)에서 <u>공공행정, 예산, 결산, 감사·조사, 정책개발·연구 등 실무경력</u>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u>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u>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p> <p>※ 학위취득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p>
----------	-----	---